

# 03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

## 첫 번째.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

### 다중이용시설 중점·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

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작성·관리, 주기적 소독·환기 수칙 등 공통적으로 의무화

###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

대중교통 이용, 집회·시위,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, 요양시설 등

### 특별방역기간 명절, 연말연시 일시적 방역 강화

일시적 위험성 증대 우려가 있는 시설·활동에 대해 방역 수칙 및 점검·처벌 강화 등



## 두 번째.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

### 시설별 수칙 등 재점검

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·효과성 및 지침 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### 활동별 수칙강화

흡연실 이용, 게스트하우스 파티, MT·수련회, 단체 식사, 동호회 등

### 방역수칙 홍보·교육

방역관리자 역량 강화, 자율적 방역관리 지원

## 세 번째.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

###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 대해

→ 과태료 부과

###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

→ 구상권 청구 활성화

### 인센티브 자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시설에 대해

→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

# 04 거버넌스 강화

## 첫 번째. 단계 조정 예고

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현장 준비시간을 확보합니다

## 두 번째. 의견수렴 다각화

생활방역위원회 정례화, 각 부처 소관 시설·업계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 체계를 강화합니다

## 세 번째. 중앙정부·지자체 협의 강화

시·도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적 단계조정도 가능하지만, 중앙정부와 필수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



“

11월 7일부터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에 맞춰 현재의 방역 조치가 조정됩니다

”

유행 확산 시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따르되,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·운영합니다

“

코로나 공존(with Covid-19) 시대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

”



# 01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

## 첫 번째. 세분화

기존 3단계를 보다 세분화 하되, 지역적 접근을 강화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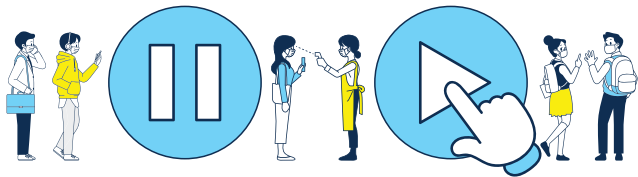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생활방역	지역 유행 단계		전국 유행 단계	
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 개시	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
## 두 번째. 격상기준

권역별 중증환자 병상여력 및 유행의 주간 증감양상에 따라 이전에 비해 상향된 격상 기준을 설정합니다

(주평균)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생활방역	지역 유행 단계		전국 유행 단계	
[수도권] 100명 미만 [타권역] 30명 미만 강원·제주는 10명 미만	[수도권] 100명 이상 [타권역] 30명 이상 강원·제주는 10명 이상	※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.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.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	전국 400명 ~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	전국 800명 ~ 1,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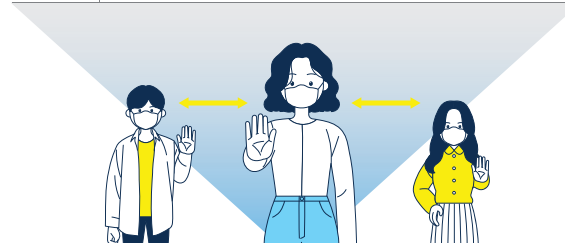


# 02 정밀해진 거리두기 체계

## 첫 번째. 다중이용시설

시설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·중·저위험에서 중점·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 합니다

구분	대상 시설
중점 관리시설 (9종)	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·카페
일반 관리시설 (14종)	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, 직업훈련기관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 이·미용업 상점·마트·백화점 독서실·스터디카페
기타시설	중점·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



구분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	생활방역	지역 유행 단계		전국 유행 단계	
중점 관리시설	유흥시설 4㎡당 1명 인원제한	춤추기,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	집합금지		
	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(150㎡이상)	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확대 (50㎡이상)	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 추가		8㎡당 1명 제한 추가
일반 관리	영화관 마스크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	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	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	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	집합금지

\* 유흥시설 및 식당도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의무화

## 두 번째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모임, 직장근무,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·단계적 방역강화를 실시합니다



구분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	생활방역	지역 유행 단계		전국 유행 단계	
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	중점·일반 관리시설, 대중교통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, 집회·시위장, 실내스포츠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	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	실내 전체 +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	실내 전체, 2m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	
모임·행사	500명 이상 지자체 협의 필요, 방역수칙 의무화	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	100인 이상 금지	50인 이상 금지	10인 이상 금지
직장 근무	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			1/3 이상 재택근무 권고	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
등교	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	밀집도 2/3 준수	밀집도 1/3 원칙, 조정 가능	밀집도 1/3 준수	전면 원격수업

## 세 번째. 국공립시설

체육시설, 기타 문화·여가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단계 격상 시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합니다